

## &lt; 수시 공시 &gt;

2012.11.19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## 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| 구분 | 집합투자기구 명칭                | 발생일<br>설정잔액(원) | 발생일<br>순자산총액(원) | 기준가격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  | 신영오딧세이10증권투자회사D-1호(채권혼합) | 551,312,464    | 564,832,817     | 1024.52 |
| 2  | 신영프라임배당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    | 3,541,336,948  | 3,531,413,060   | 997.20  |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3. 발생 일자 : 2012.11.17.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